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91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·시행(2023. 3. 21개정, 2023. 9. 22시행)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교섭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교섭단체”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

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교섭단체의 기능)**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예산의 지원)**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▶ 지방자치법

- 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3. 21.]